

서울회생법원 제14부(나)

사건번호 :2019회합100199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테코앤이

일부 주주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서

1. 탄원서 등의 내용 요지

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 8:1 감자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추가감자가 이루어지면, 특히 인가 전 M&A절차로 인수사가 지분을 95%를 가져가는 경우 소액주주의 피해가 과도하게 크므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의견

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므로 자체적인 회생이 가능함에도 인가 전 M&A를 추진하여 인수자, 매각주간사 및 관리인만 회생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견

2. '가'항에 대한 검토 의견

회생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파탄에 직면한 회사가 이해관계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따라서 회생계획안은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수행가능성,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여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현재 채무자회사의 재무상태를 보면 비록 회계상으로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회사가 제시하는 수치에 불과하고(회계감사 결과는 의견거절임), 조사위원이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또는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실사가치 기준으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므로 법에 따라 주주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 래

1. 개시결정일 기준 회사제시 금액과 조사위원의 재산상태 조사액의 차이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제시금액 | 조정금액 | 재평가금액 |
|-------|--------------|----------------|----------------|
| 총 자산 | 29,369 | (8,209) | 21,160 |
| 총 부채 | 26,960 | (4,403) | 22,557 |
| 순자산금액 | 2,409 | (3,806) | (1,397) |

2. 2020년 6월 30일 기준 회사제시 금액과 매각주간사의 재산상태 조사액의 차이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제시금액 | 조정금액 | 재평가금액 |
|-------|--------------|----------------|----------------|
| 총 자산 | 28,825 | (10,388) | 18,437 |
| 총 부채 | 25,529 | (5,586) | 19,943 |
| 순자산금액 | 3,296 | (4,802) | (1,506) |

회생계획안에서의 자본감소는 외부의 신규 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병합 또는 소각함으로써 신규 자본 유치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수 밖에 없고 이때 어느 정도까지 자본을 감소시켜야 하는지는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와 수익능력,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현재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상기의 원칙 등을 감안하면서도,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진행중인 M&A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나'항에 대한 검토의견

회생절차는 법원의 감독 하에 주요사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없으며, 관리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법원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은 상기한 바와 같습니다.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전 M&A를 진행한 것은 공적수탁자로서 자력 회생보다는 인가전 M&A진행을 통한 조기 경영정상화가 이해관계인집단에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인수자, 매각주간사 및 관리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사후 판단이지만 코로나사태 등으로 인한 영업부진 등 현재의 외부환경을 감안시 자체적인 회생을 꾀했다면 계속기업으로서 생존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본 관리인의 충심을 이해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

주식회사 데코앤이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이영창

